

<p>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로서 공원 조성을 위한 총 사업비 101억 8,400만 원은 도시계획 변경후 중·장기 재정투자 사업에 반영, 구 예산으로 2,000년까지 토지보상 및 시설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는바</p> <p>○ 공원의 규모와 기능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조기집행을 위하여서도 근린공원으로의 변경 결정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됨.</p> <p>7. 심사결과 : 반대의견 제시</p> <p>○ 어린이공원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할 실익이 없음.</p> <hr/> <p>○議長 文一權 그러면 도시계획안에 대한 회의건의청취 17건을 都市整備委員會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市議會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p>	<p>議員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이상 17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p> <hr/> <p>(參 照)</p> <p style="text-align: center;">도시계획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15%;">의안 번호</td> <td style="width:15%; text-align: center;">803</td> <td style="width:30%;">제출일자: 1997. 5. 28.</td> <td style="width:40%;">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td> </tr> </table> <p>1. 안건명: 서초구 방배동 산 75-1 일대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p> <p>2. 입안내용: 공원의 단순면적 조정 및 시설의 세분 변경</p>	의안 번호	803	제출일자: 1997. 5. 28.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의안 번호	803	제출일자: 1997. 5. 28.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시설명</th> <th colspan="2">시설의 세분</th> <th rowspan="2">위 치</th> <th colspan="3">면 적 (m²)</th> <th rowspan="2">비 고</th> </tr> <tr> <th>당 초</th> <th>변 경</th> <th>당 초</th> <th>변 경</th> <th>증·감</th> </tr> </thead> <tbody> <tr> <td>공 원</td> <td>어린이 공 원</td> <td>근 린 공 원</td> <td>서초구 방배동 산 75-1 일대</td> <td style="text-align: center;">63,250</td> <td style="text-align: center;">69,578.4</td> <td style="text-align: center;">증)6,328.4</td> <td>단순면적 조정 및 시설의 세분 변경</td> </tr> </tbody> </table>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m ²)			비 고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증·감	공 원	어린이 공 원	근 린 공 원	서초구 방배동 산 75-1 일대	63,250	69,578.4	증)6,328.4	단순면적 조정 및 시설의 세분 변경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m ²)			비 고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증·감																		
공 원	어린이 공 원	근 린 공 원	서초구 방배동 산 75-1 일대	63,250	69,578.4	증)6,328.4	단순면적 조정 및 시설의 세분 변경																	
<p>3. 입안사유</p> <p>○ 서초구 방배동 산 75-1 일대 새우촌어린이공원은</p> <p>—임상이 양호한 넓은 산지형 미개발 공원으로 입지여건 및 규모 등으로 볼 때 근린공원으로 변경후 공원조성하여</p> <p>—주민의 휴식·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코자 함.</p> <p>※ 인근주민들로부터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근린공원조성 요구 민원이 있었음.</p> <p>4. 추진경위</p> <p>○ '76.9.4 : 어린이공원결정(서울시고시 제214호)</p> <p>○ '95.2.15 : 근린공원변경 검토통보(서울시→서초구)</p> <p>○ '97.2.19 : 도시계획(안) 공람공고</p> <p>5. 참고사항</p> <p>○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검토의견: 이견 없음</p> <p>○ 토지현황(10필지 69,578.4m²)</p>	<p>국·공유지 : 5,804.9m²(2필지) 사유지 : 63,773.5m²(8필지)</p> <p>○ 공원집행계획</p> <p>—총사업비 : 10,784백만원</p> <p>· 토지보상비 : 8,084백만원</p> <p>· 용역 및 시설공사비 : 2,100백만원</p> <p>※ 도시계획변경후 중·장기 재정투자사업에 반영, 토지보상 및 시설공사 시행(2000년)</p> <hr/> <p style="text-align: center;">도시계획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15%;">의안 번호</td> <td style="width:15%; text-align: center;">831</td> <td style="width:30%;">제출년월일: 1997. 7. 2.</td> <td style="width:40%;">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td> </tr> </table> <p>1. 안건명: 동대문구 용두동 34-1 일대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p> <p>2. 입안내용: 공원확충</p>			의안 번호	831	제출년월일: 1997. 7. 2.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의안 번호	831	제출년월일: 1997. 7. 2.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시설의 세분</th> <th>위 치</th> <th>면적(m²)</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근 린 공 원</td> <td>동대문구 용두동 34-1 일대</td> <td style="text-align: center;">11,369</td> <td></td> </tr> </tbody> </table>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m ²)	비 고	근 린 공 원	동대문구 용두동 34-1 일대	11,369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m ²)	비 고																					
근 린 공 원	동대문구 용두동 34-1 일대	11,369																						

<p>3. 입안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대문구 용두동 34-1번지 일대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계천로, 고산자로, 하정로 등 간선도로로 둘러싸인 삼각형 토지로 소규모 공장, 노후주택 및 윤락가 등이 난립되어 있어 주거 및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이므로 - 동 지역을 공원으로 결정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주민의 휴식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코자 함. <p>4. 추진경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7.1. : 도시계획안 공람공고 ※ 공람공고시 제출된 주민의견(11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원결정 반대 : 11건 공원결정 찬성 : 1건(한신상호신용금고) ○ 1997.4.28 :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 요청 ○ 1997.6.11 : 연차별 집행계획수립 제출(시장방침 제199호) ○ 1997.6.16 : 투자심사 결과 통보('98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결과 : 재검토 및 유보 <p>5. 참고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부서 검토의견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검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조성계획시 시민의 휴식공간이 되도록 하는 방안과 시민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보행동선 및 주변지역의 교통처리 개선방안 검토가 요망됨. 	<p>〈도시계획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량리·왕십리 부도심권정비기본계획(안) 상 본 지역은 공원용도는 아니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시는 이를 반영할 수 있음. <p>○ 토지현황(총 20필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유지 : 19필지 10,501m²(소유자 : 이민문 외 11인) 시유지 : 1필지 868m²(도로) <p>※ 건축물 : 31동(유허가 23동, 무허가 8동)</p> <p>○ 도시계획사항 : 일반주거지역</p> <p>○ 소요예산 : 255.8억원('97년 : 2억, '97년 추경 : 54.5억, '98년 : 101.6억, '99년 : 97.7억)-시비</p> <p>※ 보상비 : 233.8억, 공사비 기타 : 22억</p> <p>○ 공원조성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경시설 1개소 - 편익시설 120점 - 수목식재 : 소나무 외 27종 67,500주 <hr style="border: 0.5px dashed black;"/> <p style="text-align: center;">도시계획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r> <td style="width: 15%;">의안 번호</td> <td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839</td> <td style="width: 70%;">제출년월일 : 1997. 7. 4.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td> </tr> </table> <p>1. 안건명 : 도봉구 도봉동 4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p> <p>2. 입안내용 : 공원의 확충</p>	의안 번호	839	제출년월일 : 1997. 7. 4.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의안 번호	839	제출년월일 : 1997. 7. 4.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0%;">시설의 세분</th> <th style="width: 30%;">위 치</th> <th style="width: 20%;">면적(m²)</th> <th style="width: 20%;">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근 린 공 원</td> <td>도봉구 도봉동 4번지 일대</td> <td style="text-align: center;">115,554</td> <td></td> </tr> </tbody> </table>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m ²)	비 고	근 린 공 원	도봉구 도봉동 4번지 일대	115,554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m ²)	비 고						
근 린 공 원	도봉구 도봉동 4번지 일대	115,554							
<p>3. 입안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봉구 도봉동 4번지 일대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 7호선(도봉산역), 경원선, 도봉로에 인접된 접근성이 양호한 미개발토지로, - 시민의 휴식·만남의 장소 및 여가선용공간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원으로 도시계획결정코자 함. <p>4. 추진경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7.5.12 : 도시계획안 공람공고 ※ 공람공고시 제출된 주민의견(2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택지개발요구(시민아파트 주민일동) 근린공원조성요구(고봉채) ○ 1997.5.16 : 도봉시민공원 조성계획 보고(시 	<p style="text-align: center;">장방침 제421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지원 건의(토지매입비 152억원, '97년 우선 52억원) <p>○ 1997.6.26 : 투자심사 요청(환경관리실→기획관리실)</p> <p>5. 참고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검토의견 : 이견 없음 ○ 도시계획사항 :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 ○ 토지 및 건축물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 : 128필지 115,554m²(국·공유지 65필지 13,937m², 사유지 63필지 101,617m²) 건축물 : 아파트 5동(4층) 180세대 ○ 소요예산 : 218억원(보상비 152억원, 공사 								

<p style="text-align: center;">비 및 기타 66억)</p> <p>○ 공원조성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경시설 : 잔디광장 및 피크닉장, 만남의 광장, 간이수목원 -체육시설 : 로울러스케이트장, 다목적운동장, 산악자전거타기 코스 등 -기타시설 : 주차장, 구민체육센터 등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p>	<p style="text-align: center;">상세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의안 번호</td> <td style="width: 20%; text-align: center;">857</td> <td style="width: 50%;">제출년월일 : 1997. 8. 19.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td> </tr> </table>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건명 : 영등포구 신길동 506번지 일대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구역 지정 2. 입안내용 : 용도지역 상향조정 및 상세계획구역 지정 	의안 번호	857	제출년월일 : 1997. 8. 19.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의안 번호	857	제출년월일 : 1997. 8. 19.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용도지역변경</th> <th rowspan="2">면적(m²)</th> <th rowspan="2">용도구역</th> <th rowspan="2">면적(m²)</th> <th rowspan="2">위 치</th> <th rowspan="2">비 고</th> </tr> <tr> <th>기 정</th> <th>변 경 후</th> </tr> </thead> <tbody> <tr> <td>일반주거지역</td> <td>준주거지역</td> <td style="text-align: center;">23,000</td> <td style="text-align: center;">상세계획구역</td> <td style="text-align: center;">45,890</td> <td style="text-align: center;">신길동 506번지 일대</td> <td style="text-align: center;">신길6생활권 중심</td> </tr> </tbody> </table>		용도지역변경		면적(m ²)	용도구역	면적(m ²)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후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3,000	상세계획구역	45,890	신길동 506번지 일대	신길6생활권 중심
용도지역변경		면적(m ²)	용도구역						면적(m ²)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후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3,000	상세계획구역	45,890	신길동 506번지 일대	신길6생활권 중심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입안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길동 506번지 일대를 생활권 중심으로 육성·발전시킴은 물론, 계획적 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과 동시에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코자 함. 4. 추진경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7.2.7~'97.2.21 : 공람공고(14일간) 5. 참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의견 : 이면도로 정비를 위해 도로를 포함하는 구역의 확대 지정이 요망됨.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도시설계지구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의안 번호</td> <td style="width: 20%; text-align: center;">858</td> <td style="width: 50%;">제출년월일 : 1997. 8. 19.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td> </tr> </table>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건명 : 영등포구 대림동 706번지 일대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 지정 2. 입안내용 : 용도지역 상향조정 및 도시설계지구 지정 	의안 번호	858	제출년월일 : 1997. 8. 19.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의안 번호	858	제출년월일 : 1997. 8. 19.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용도지역변경</th> <th rowspan="2">면적(m²)</th> <th rowspan="2">용도지구</th> <th rowspan="2">면적(m²)</th> <th rowspan="2">위 치</th> <th rowspan="2">비 고</th> </tr> <tr> <th>기 정</th> <th>변 경 후</th> </tr> </thead> <tbody> <tr> <td>일반주거지역</td> <td>준주거지역</td> <td style="text-align: center;">58,500</td> <td style="text-align: center;">도시설계지구</td> <td style="text-align: center;">58,500</td> <td style="text-align: center;">대림동 706번지 일대</td> <td style="text-align: center;">대림2생활권 중심</td> </tr> </tbody> </table>		용도지역변경		면적(m ²)	용도지구	면적(m ²)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후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58,500	도시설계지구	58,500	대림동 706번지 일대	대림2생활권 중심
용도지역변경		면적(m ²)	용도지구						면적(m ²)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후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58,500	도시설계지구	58,500	대림동 706번지 일대	대림2생활권 중심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입안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림동 706번지 일대를 생활권 중심으로 육성·발전시킴은 물론, 계획적 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과 동시에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코자 함. ※ 구청장이 입안하여 요청한 내용중 대림동 700, 709, 710번지 일대는 생활권 중심 체계상 범역이 과다하여 조정토록 하였으나 당초 안대로 재요청한 사항으로 심의시 제척됨이 타당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추진경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7.2.7~'97.2.21 : 공람공고(14일간) 5. 참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정형한 필지현황을 고려하여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대림동 700번지 일대는 개발이 기 완료되었는바 제척하며, -남·북측 경계부는 도로정비를 위해 이면도로를 포함하여 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도시계획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		1. 안건명: 강북구 변동 산 25-10(공원해제) 및 변동 123-4(공원결정)번지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의안 번호	863	제출년월일: 1997. 8. 19.	2. 입안내용: 공원의 확충		
		제출자: 서울특별시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m ²)			비 고
		기 정	변 경	증	
오 동 근 린 공 원	강북구 변동 산 25-10 및 변동 123-4번지	1,437,414	1,437,572	158	• 공원해제: 17m ² (사회복지시설에 편입) • 공원결정: 175m ²
3. 입안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B=10m²)와 사회복지시설에 의해 분리된 변동 산 25-10번지(면적 17m²)를 공원 해제후 사회복지시설에 편입하는 대신 우리 시 도시공원정비기준에 따라 변동 123-4(면적 175m²)번지를 대체공원으로 지정코자 함. 			
4. 추진경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5.11.21: 도로결정(B=10m) ○ '96.11.13: 사회복지시설 결정 ○ '97.5.10: 도시계획안 공람공고(제출된 주민의견: 없음) 			
5. 참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검토의견: 이견 없음 ○ 토지현황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도시계획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p> <p>의안 번호 871 제출년월일: 1997. 8. 20. 제출자: 서울특별시</p> <p>1. 안건명: 도봉구 창동 352-7 외 4필지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p> <p>2. 입안내용: 공원의 확충</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원해제토지(산 23-10): 사유지 및 구유지(각각 1/2공동소유) 공원결정토지(123-4): 구유지 ○ 소요예산(보상비): 6백만원('96집행 잔액으로 보상)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m ²)			비 고
		기 정	변 경	증	
월계근린공원	도봉구 창동 352-7일대	1,611,579	1,615,546	3,967	
3. 입안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시의 월계근린공원 조성계획 수립시 현재의 제일은행 축구장 부지인 도봉구 창동 산 48-4 일대를 공원시설중 설치 가능한 운동시설(종합운동장)을 설치하도록 계획되어 있고 ○ 일단의 자연녹지 지역 모두를 공원결정 ※ 5필지 모두 제일은행 소유임 			
4. 추진경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3.10.2: 월계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 ○ 1997.6.25: 도시계획안 공람공고(주민의견 접수: 1건) ※ 공람공고시 제출된 주민의견: 매각 추진중에 있으므로 추후 매수협의시 매각 			
5. 참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검토의견: 이견 없음 ○ 환경관리실(공원과): 토지의 효율성, 공원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원편입이 바람직함. ○ 도시계획사항: 자연녹지지역 ○ 토지소유자: 제일은행(5필지) ○ 소요예산(보상비): 14억('98예산반영 요구: 50억 - 월계근린공원 토지매입비) ※ 월계근린공원 조성 사업계획 - 총사업비: 1,474억원(기투자: 70억, '98년 예정 가격 수용 요구(제일은행)) 			

<p style="text-align: center;">: 50억, '99년이후 : 1,354억)</p> <p>-사업기간 : '97년~2002년</p> <p>-공원시설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경시설 : 잔디광장, 파고라 등 • 휴양시설 : 휴게소, 약수터, 정자 등 • 운동시설 :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게이 트볼장, 배드민턴장 등 • 교양시설, 편의시설, 기타시설 <hr/> <p style="text-align: center;">도시계획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15%;">의안 번호</td> <td style="width:15%;">901</td> <td style="width:30%;">제출년월일 : 1997. 10.</td> <td style="width:40%;">제 출 자 : 서울특별시</td> </tr> </table>	의안 번호	901	제출년월일 : 1997. 10.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p>1. 건명 : 도시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 및 용도지구(풍치지구) 변경결정</p> <p>2. 제안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시설(옥수초등학교)와 접해 있는 소규모 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풍치지구를 해제하는 대신에 용도지역을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 「풍치지구 관리계획」의 관리기준 : [기준 16] 학교 등의 대규모시설에 연결해 있으면서 자연풍치 유지의 기능이 상실된 소규모 지역 <p>3. 주요요지(입안내용)</p>										
의안 번호	901	제출년월일 : 1997. 10.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 입안내용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위 치</th> <th colspan="2">용도지역 변경</th> <th rowspan="2">면적(m²)</th> <th rowspan="2">비 고</th> </tr> <tr> <th>변 경 전</th> <th>변 경 후</th> </tr> </thead> <tbody> <tr> <td>성동구 금호4가동 233번지</td> <td>일반주거지역</td> <td>1종 일반주거지역</td> <td style="text-align: center;">9,305</td> <td>풍치지구를 해제하고 한강변 자연경관을 고려하여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td> </tr> </tbody> </table>		위 치	용도지역 변경		면적(m ²)	비 고	변 경 전	변 경 후	성동구 금호4가동 233번지	일반주거지역	1종 일반주거지역	9,305	풍치지구를 해제하고 한강변 자연경관을 고려하여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위 치	용도지역 변경		면적(m ²)	비 고											
	변 경 전	변 경 후													
성동구 금호4가동 233번지	일반주거지역	1종 일반주거지역	9,305	풍치지구를 해제하고 한강변 자연경관을 고려하여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 도시계획용도지구(풍치지구) 변경 입안내용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rowspan="2">지 구 명</th> <th rowspan="2">위 치</th> <th colspan="2">변경내용(m²)</th> <th rowspan="2">비 고</th> </tr> <tr> <th>변경전</th> <th>변경후</th> </tr> </thead> <tbody> <tr> <td>풍치지구</td> <td>금호·옥수지구</td> <td>성동구 금호4가동 233번지</td> <td style="text-align: center;">517,338</td> <td style="text-align: center;">508,033 (감9,305)</td> <td>대규모시설에 연결해 있는 소규모 불량밀집지역의 풍치지구를 해제하는 대신에 용도지역에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함.</td> </tr> </tbody> </table>		구 분	지 구 명	위 치	변경내용(m ²)		비 고	변경전	변경후	풍치지구	금호·옥수지구	성동구 금호4가동 233번지	517,338	508,033 (감9,305)	대규모시설에 연결해 있는 소규모 불량밀집지역의 풍치지구를 해제하는 대신에 용도지역에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함.
구 분	지 구 명				위 치	변경내용(m ²)		비 고							
		변경전	변경후												
풍치지구	금호·옥수지구	성동구 금호4가동 233번지	517,338	508,033 (감9,305)	대규모시설에 연결해 있는 소규모 불량밀집지역의 풍치지구를 해제하는 대신에 용도지역에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함.										
<p>4. 도시계획상입기확단 의견 : 이견 없음</p> <p>5. 참고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도시계획사항 : 일반주거지역, 풍치지구 ○ 공람공고중 의견접수 : 없음 <hr/> <p style="text-align: center;">도시계획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15%;">의안 번호</td> <td style="width:15%;">902</td> <td style="width:30%;">제출년월일 : 1997. 10. 16.</td> <td style="width:40%;">제 출 자 : 서울특별시</td> </tr> </table> <p>1. 안건명 : 영등포구 신길동 3610번지 일대 (신풍역) 상세계획구역결정</p> <p>2. 입안내용 : 상세계획구역 결정</p>	의안 번호	902	제출년월일 : 1997. 10. 16.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의안 번호	902	제출년월일 : 1997. 10. 16.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 분</th> <th>구 역 명</th> <th>위 치</th> <th>면적(m²)</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결 정</td> <td>신풍역 상세계획구역</td> <td>영등포구 신길동 3610번지 일대</td> <td style="text-align: center;">69,350</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적(m ²)	비 고	결 정	신풍역 상세계획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3610번지 일대	69,350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적(m ²)	비 고											
결 정	신풍역 상세계획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3610번지 일대	69,350												
<p>3. 입안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기본계획상 생활권 중심으로 상세계획을 통해 무질서한 신풍역 주변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주민생활 편의 	<p style="text-align: center;">시설을 확보하고자 함.</p> <p>4. 추진경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7.7.28 : 도시계획(안) 공람공고(영등포구) -주민의견 : 없음 														

5. 참고사항
 ○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의견 : 이견 없음

도시계획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

의안 번호	905	제출년월일 : 1997. 10. 16.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	-----	--

1. 안전명 : 가양대교 복단 연결도로 사업을 위한 도시계획결정
 2. 입안내용 : 도로확장, 신설 및 광장변경

구분	규 모				사용 형태	연장 (m)	기 점	종 점	기 능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32	25	일반 도로	2,175	마 포 구 상 압 동	은 평 구 수 색 동	주간선 도로	수색로접속부 폭원확장 B=25~37 L=690m
변경	대로	3	32	25~37	일반 도로	2,175	마 포 구 상 압 동 49-129	은 평 구 수 색 동 수 색 로	주간선 도로	
신설	대로	3	201	28	일반 도로	1,530	마 포 구 상 압 동 1543 (제208호광장)	마 포 구 상 압 동 45 (대로3류32호)	주간선 도로	광장접속부 B=37m

○ 광장변경사항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시설 번호	위 치	면 적 (m ²)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후	
변경	광 장	교통광장	208	마포구 상압동 496번 지 일대	160,863	감)61	160,802	가양대교 복 단

3. 입안사유
 ○ '99년 12월말 개통 예정인 가양대교와 연계 가능한 가양대교복단~수색로간 도로를 신설(확장)하여 교통난이 심각한 서울 북·서부지역(행주대교, 성산대교)의 교통난을 완화코자 하는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을 결정 및 변경결정하기 위함.

4. 추진경위
 ○ '95.5.17 : 가양대교복단 연결도로(가양대교복단~시오릉로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착공
 -용역수행자 : (주)동명기술공단
 ○ '95.5.~1 : 노선(안) 선정 및 관계기관 협의(고양시등)
 ○ '96.2.6 : 1차도로 자문회의 개최
 ○ '96.4.10 : 2차도로 자문회의 개최
 ○ '96.5.23 : 용역보고서 송부(서울시→고양시)
 -우리 시 단계별 시행계획에 대한 투자 계획, 도시계획결정 등 검토의견 요청
 ○ '96.6.20 : 동 용역 준공
 ○ '96.10.9 : 1단계 구간 추진계획 방침 결정

○ '96.12.4 : 시계간 연결도로 시행에 대한 투자계획협의(서울시→경기도)
 -우리 시에서 1단계(가양대교복단~수색로)구간을 2000년 6월까지 투자예정이니 단계(1·2·3단계)별, 행정구역별 투자 및 시기·시행 방법에 대한 협의
 ○ '97.5.16 : 투자계획에 대한 의견통보(고양시→서울시)
 -1단계 건설구간 사업비 서울시 부담요구
 -2·3단계 구간에 대한 사업비는 광역도로망 구축사업에 따른 사업비 부담 협의 요청
 ○ '97.7.8 : 시계간 연결도로 건설추진 협조(서울시→경기도)
 -1단계 구간은 우리 시 부담으로 추진 계획이니 도시계획결정 협조요청
 --2·3단계 구간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특별법”에 따라 중앙정부 지원을 받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니 귀도에서도 동시투자가 되도록 협조요청
 ※ 미회시

<p>· 입찰방법-설계·시공 일괄 방식(턴키)</p> <p>5. 참고사항</p> <p>○ 주민의견청취 현황</p> <p>- 공람공고기간 : '97.8.5~'97.8.19</p> <p>- 청취방법 : 4개 일간지(국민일보, 경향신문, 매일경제, 내외경제) 및 개별통지(73명)</p> <p>- 주요의견</p> <p>가) 지역여건(난지도 쓰레기 매립지 피</p>	<p>해)을 감안하여 적절한 보상요망</p> <p>나) 도로계획 노면이 주택지보다 높아 침수 우려가 있으니 대책 강구요망</p> <p>- 조치의견</p> <p>가) 실시계획인가후 보상협의시 관련법에 의거 보상추진</p> <p>나) 지형여건을 감안하여 설계에 반영할 계획임.</p>									
○ 사업개요										
구 분	전 체	1 단 계	2 단 계	3 단 계						
구 간	가양대교 북단~서오릉로	가양대교 북단~수색로	수색택지개발 지구~서오릉로	가양대교 북단 연결도로~가좌로간						
개 요	폭 25~37m 연장 8,652m [서울시 3,447m [고양시 5,205m	폭 28~37m 연장 2,220m [서울시 1,370m [고양시 850m	폭 27.5~29m 연장 4,866m [서울시 1,526m [고양시 3,340m	폭 25m 연장 1,566m [서울시 551m [고양시 1,015m						
사 업 비 (억 원)	2,569 [서울시 1,665 [고양시 904	806 [서울시 806 [고양시 -	1,389 [서울시 616 [고양시 773	374 [서울시 243 [고양시 131						
사업기간	1997~2000년 이후	1997~2000	2000년 이후	2000년 이후						
* 사업비 부담(서울시, 고양시)액은 추정 금액임.										
<p>○ 지장물 현황 [토지: 167필지 73,301m² [건물: 10동 512m²</p> <p>도시계획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p> <p>의안 번호 906 제출년월일: 1997. 10. 16.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p>		<p>1. 안전명: 도로확장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결정</p> <p>2. 입안내용: 도로변경</p>								
구분	규 모				사용 형태	연장 (m)	기 점	중 점	기 능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121	15	일반 도로	2,240	노원구 상계동 산 168-8	노원구 상계동 산 156	보조간선도로	연장 870m구간 폭 15m→20m 변경
변경	중로	2	121	15	일반 도로	1,370	노원구 상계동 68의 3	노원구 상계동 산 156-1	보조간선도로	
변경	중로	1	386	20	일반 도로	870	노원구 상계동 95-199	노원구 상계동 72-8	보조간선도로	

3. 입안사유
 ○ 본 도로 주변에 재개발 및 택지개발(7개구역, 약 10,790세대)등으로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는바, 증가되는 교통량 처리를 위하여 도로폭을 15m(2차선)에서 20m(4차선)로 확장하기 위함.
4. 추진경위
 ○ '91.4.7 :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건고제 198호)
 ○ '97.5.8 : 도시계획(안) 공람공고
- '97.5.28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97.8.8 :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요청
 ○ '97.9.2 : 관련부서(도로계획과 외 2개부서) 협의 : 의견 없음
5. 참고사항
 ○ 주민의견청취 현황
 - 공람공고기간 : '97.5.9~5.26
 - 청취방법 : 2개 일간지(매일경제, 서울경제)
 - 주요의견 : 13명

의견제출자		의견내용	서울시의견	비고
주소	성명			
노원구 상계동 75-14	홍갑용 외 8인	○ 보상가격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관련법에 의거 보상 추진	방문민원
노원구 상계동 107-350	황연우	○ 도로확장에 반대(존치요망)	○ 수용불가(교통량증가로 확장 절대필요)	"
노원구 상계동 110-9	안수연	○ 양측으로 균일하게 확장하는 방안으로 변경요망	○ 토지이용, 사유재산 보호, 사업비 등을 고려 변경곤란	"
노원구 상계동 68-56외 6필지	한영권	○ 환지처분 후 토지수용은 불합리하므로 대토요망	○ 현행법상 수용불가	서신민원
노원구 상계동 107-995	이범세	○ 환지처분 이전상태에서 도로변경계획 추진요망	○ 수용불가	"

- 환지(상계 6구역 택지개발) 확정일 : '89.1.17
 ○ 소요예산 : 4,100백만원
 [보상비 : 3,670백만원
 공사비 : 430백만원
 ○ 지장물 현황 : 토지-69필지 2,825m²
 건물-28동

도시계획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

의안번호	907
------	-----

제출년월일 : 1997. 10. 16.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안건명 : 성북구 하월곡동 90-206번지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
 2. 입안내용 : 공원의 확충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²)	비고
근린공원	성북구 하월곡동 90-206번지	1,751.3	동국유리공장부지

3. 입안사유
 ○ 동국유리공장은 유리가공에 따른 소음, 진동을 다량발생하는 공해업소로 인근 주거환경을 크게 저해하고 있어
 ○ 동 공장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공원결정코자 함.
4. 추진경위
 ○ 1997.6.16. '98사업투자심사 결과 통보(예산2담당관 →공원과)

- * 심사결과 : 단독주택단지 중앙에 위치한 입지여건으로 활발한 이용이 예상되고, 기존 공장의 소음 공해, 민원해소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으로 타당성이 인정됨.
- 1997.8.4 도시계획안 공람공고(의견 접수 : 1건)
 ○ 의견내용 : 공장이전시 부지확보가 어려운

<p style="text-align: center;">바, 이전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를 주거나 이전부지 대토요망</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토는 불가하며 공장이전에 따른 여유를 달라는 의견은 추후 사업 시행시 충분히 협의 처리할 예정임.</p> <p>5. 참고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검토의견: 이견 없음 ○ 도시계획사항: 준주거지역 ○ 토지 및 건축물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 1필지 1,751.3m²(소유자: 안영언) [건축물: 사무실 및 창고 각 1동 	<p>○ 소요예산: 33억원</p> <p style="text-align: center;">*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후 토지보상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자 함.(공원과)</p> <hr/> <p style="text-align: center;">도시계획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의안 번호</td> <td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908</td> <td style="width: 70%;">제출년월일: 1997. 10. 16.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td> </tr> </table> <p>1. 안건명: 중랑구 면목동 산 3번지(공원해제) 및 산 5-1번지 일대(공원결정)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p> <p>2. 입안내용: 공원경계 조정</p>	의안 번호	908	제출년월일: 1997. 10. 16.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의안 번호	908	제출년월일: 1997. 10. 16.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시설의 세분</th> <th rowspan="2">위 치</th> <th colspan="3">면 적 (m²)</th> <th rowspan="2">비 고</th> </tr> <tr> <th>기 정</th> <th>변 경</th> <th>증</th> </tr> </thead> <tbody> <tr> <td>용 마 자연공원</td> <td>중랑구 면목동 산 3번지 및 산 5-1일대</td> <td style="text-align: center;">5,073,566</td> <td style="text-align: center;">5,074,955</td> <td style="text-align: center;">1,389</td> <td>공원해제: 182m² 공원결정: 1,571m²</td> </tr> </tbody> </table>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m ²)			비 고	기 정	변 경	증	용 마 자연공원	중랑구 면목동 산 3번지 및 산 5-1일대	5,073,566	5,074,955	1,389	공원해제: 182m ² 공원결정: 1,571m ²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m ²)				비 고								
		기 정	변 경	증												
용 마 자연공원	중랑구 면목동 산 3번지 및 산 5-1일대	5,073,566	5,074,955	1,389	공원해제: 182m ² 공원결정: 1,571m ²											
<p>3. 입안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인의 요청에 따라 용마자연공원의 경계조정을 위하여 중랑구 면목동 산 3번지 일부(182m²) 공원을 해제하는 대신 민원인 소유토지인 면목동 산 5-1번지 일대(1,345m²)를 대체 공원으로 지정 ○ 대체공원 인접 국유지(226m²) 공원결정 <p>4. 추진경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7.6.23: 도시계획안 공람공고(제출된 주민의견 없음) <p>5. 참고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부서 검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이견 없음 - 환경관리실(공원과): 개발제한구역을 대체 지정하는 것은 유사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처리기준 등이 애매한 사항으로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 	<p style="text-align: right;">한 것으로 판단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해제토지(산 3번지 일부): 최장호 외 2인(182m²) - 공원결정토지(5필지 1,571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장호 외 2인(3필지 1,345m²) [국유지 (2필지 226m²) ○ 도시계획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해제 토지: 자연녹지지역 - 공원결정 토지: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 <hr/> <p style="text-align: center;">도시계획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의안 번호</td> <td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917</td> <td style="width: 70%;">제출년월일: 1997. 10. 24.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td> </tr> </table> <p>1. 안건명: 철도선형 변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철도, 도로) 변경</p> <p>2. 입안내용: 철도 및 도로선형 변경</p>	의안 번호	917	제출년월일: 1997. 10. 24.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의안 번호	917	제출년월일: 1997. 10. 24.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시설의 구분</th> <th>노 선 명</th> <th>위 치</th> <th>변 경 개 요</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철 도</td> <td>경 의 선</td> <td>구로구 궁동 230~은수동 9-6간</td> <td>280m구간 선형변경(폭 0~6m)</td> <td>면적 795m² 증가</td> </tr> <tr> <td>도 로</td> <td>은수동길</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선형변경(연장280m)</td> <td>면적증감 없음</td> </tr> </tbody> </table>		시설의 구분	노 선 명	위 치	변 경 개 요	비 고	철 도	경 의 선	구로구 궁동 230~은수동 9-6간	280m구간 선형변경(폭 0~6m)	면적 795m ² 증가	도 로	은수동길	"	선형변경(연장280m)	면적증감 없음
시설의 구분	노 선 명	위 치	변 경 개 요	비 고												
철 도	경 의 선	구로구 궁동 230~은수동 9-6간	280m구간 선형변경(폭 0~6m)	면적 795m ² 증가												
도 로	은수동길	"	선형변경(연장280m)	면적증감 없음												
<p>3. 입안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청에서 추진중인 경인복복선(구로~인 	<p>천간) 건설공사 구간중 동 구간은 지형여건상(표고차 약 2.5~3.0m) 노반 설치</p>															

<p>를 위하여는 용벽 구조물설치가 불가피한 실정이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벽 구조물 설치시는 도시계획도로인 온수동길(폭 20m)을 약 6m정도 침범하게 되어 도로폭 (20m) 확보가 불가하므로 도로폭 확보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철도, 도로)을 변경 결정하기 위함. <p>4. 추진경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7.1.30 :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요청(철도청→구) ○ 1997.8.5 : 도시계획(안) 공람공고 ○ 1997.8.29 : 구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가결(97년 제4차) ○ 1997.8.30 : 도시계획시설(철도, 도로) 변경 결정 요청(구→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7.9.25 : 관련자료 보완 및 유관부서 협의 <p>5. 참고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계획결정 :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3-77호('93.3.18)-철도, 도로 ○ 도시계획현황 : 주거지역, 풍치지구 ○ 유관부서 협의사항 : 의견 없음 *도로계획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철도청, 교육청 등 ○ 주민의견 청취사항 -공람공고기간 : '97.8.6~8.20 -청취방법 : 2개 일간지(매일경제, 서울경제) -주민의견 및 조치사항 : 1명
--	--

제 출 자	의 의 건	조 치 사 항	비 고
서초구 방배본동 767-21 전성계	온수동 9-6 토지가 도시계획 도로에 기 편입되었는데 추가 편입되므로 반대	도시계획도로 변경이 불가피하므로 미반영	

○ 온수동길(폭 20m)개설 사업현황 -사업기간 : 1995~1998	-추진사항
---	-------

구 분	총	현 재	장 래	비 고
규 모	연장 1,550m	연장 900m	연장 650m	
예 산 액 (백 만 원)	공 : 2,770 보 : 10,200	공 : 1,470 보 : 9,458	공 : 1,300 보 : 7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촉토지 및 건물현황 -토지 : 10필지 848㎡(사유지 4필지 164㎡) -건물 : 없음 ○ 경인북복선 사업 개요 -구간 : 구로~인천간(27km) -사업기간 : 1991년~1998년 -사업비 : 5,180억원 	<p>.....</p> <p style="text-align: center;">도시계획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0%;">의안 번호</td> <td style="width: 10%;">919</td> <td style="width: 80%;">제출년월일 : 1997. 10. 24.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td> </tr> </table> <p>1. 안건명 :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2. 입안내용 : 도로 변경(해제)결정</p>	의안 번호	919	제출년월일 : 1997. 10. 24.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의안 번호	919	제출년월일 : 1997. 10. 24.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시 설 명	위 치	변 경 내 용	비 고
도 로	용산구 용산동1가 이태원로~ 용산동6가 서빙고로간	도로(폭20m, 연장 1,440m)해 제	미8군 부지내임

<p>3. 입안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도로는 1962년도에 결정된 도시계획 도로로서 현재의 주변 가로망 체계상 불합리(동작대교 연계불가)할 뿐 아니라 ○ 정부에서 추진중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p>건립(용산가족공원내)계획에 지장되고 있어 이를 해소코자 도시계획시설(도로)을 변경(해제)결정코자 함.</p> <p>4. 추진경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6.9.17 : 국립중앙박물관 건립계획 관련
---	---

<p style="text-align: center;">도시계획도로 변경 협의(문체부 →서울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6.9.25 : 우리 시 토지이용계획에 지장되므로 건물배치 계획 조정요구 (서울시→문체부) ○ '97.3.24 : 국립중앙박물관 건립 계획관련 도시계획도로 노선 재협의(문체부→서울시) ○ '97.5.12 : 재협의 회신(서울시→문체부) * 도시계획도로(폭 20m) 해제 계획임. ○ '97.10.1 : 도시계획(안) 공람공고 <p>5. 참고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 건국보 9673호('62.12.8) ○ 도시계획현황 : 자연녹지지역 ○ 유관부서 협의사항 : 의견 없음(도로계획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문체부, 용산구청) ○ 주민의견 청취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람공고기간 : '97.10.1~'97.10.15 - 청취방법 : 2개 일간지(경향신문, 국민일보) - 주민의견 청취결과 : 없음 <p>○ 국립중앙박물관 건립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기간 : '93~2003년 - 총사업비 : 3,600억원 - 사업개요 : 연건평 42,640평 <hr style="border-top: 1px dashed black;"/> <p style="text-align: center;">도시계획 용도지구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5px;"> <tr> <td style="width: 15%;">의안 번호</td> <td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920</td> <td style="width: 70%;">제출년월일 : 1997. 10.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td> </tr> </table>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건명 : 도시계획 용도지구(미관지구) 변경 결정 2. 입안내용 : 강서구 “등촌삼거리~경인국도간” 미관지구 변경결정 	의안 번호	920	제출년월일 : 1997. 10.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의안 번호	920	제출년월일 : 1997. 10.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colspan="2">지 구 명</th> <th rowspan="2">위 치</th> <th colspan="3">면 적 (m²)</th> <th rowspan="2">비 고</th> </tr> <tr> <th>변 경 전</th> <th>변 경 후</th> <th>폭(m)</th> <th>연장(m)</th> <th>면적(m²)</th> </tr> </thead> <tbody> <tr> <td>변경결정</td> <td style="text-align: center;">4종</td> <td style="text-align: center;">5종</td> <td>강서구 등촌삼거리~경인국도간</td> <td style="text-align: center;">12</td> <td style="text-align: center;">2,453</td> <td style="text-align: center;">29,296</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지 구 명		위 치	면 적 (m ²)			비 고	변 경 전	변 경 후	폭(m)	연장(m)	면적(m ²)	변경결정	4종	5종	강서구 등촌삼거리~경인국도간	12	2,453	29,296	
구 분	지 구 명		위 치	면 적 (m ²)			비 고															
	변 경 전	변 경 후		폭(m)	연장(m)	면적(m ²)																
변경결정	4종	5종	강서구 등촌삼거리~경인국도간	12	2,453	29,296																
<p>3. 입안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촌로(강서구 관내)를 따라 4종 미관지구가 지정되어 있으나, 그간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당초 지정목적과 부합되지 않으며, 동 구간 양천구 관내는 이미 변경결정('97.6.25)되어 이와 형평성을 감안 5종 미관지구를 변경결정코자 함. <p>4. 추진경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람공고 : '97.8.11(경향신문, 매일경제신문) ○ 의견청취 : '97.8.12~8.25(14일간) ○ 의견접수 및 처리현황 : 없음 	<p>5. 참고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의견 - 의견 없음 <hr style="border-top: 1px dashed black;"/> <p style="text-align: center;">도시계획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5px;"> <tr> <td style="width: 15%;">의안 번호</td> <td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944</td> <td style="width: 70%;">제출년월일 : 1997. 11. 4.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td> </tr> </table>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건명 : 도시계획 상세계획구역 변경결정 2. 주요요지 	의안 번호	944	제출년월일 : 1997. 11. 4.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의안 번호	944	제출년월일 : 1997. 11. 4.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위 치</th> <th rowspan="2">도시계획구역</th> <th colspan="2">면적변경(m²)</th> <th rowspan="2">비 고</th> </tr> <tr> <th>당 초</th> <th>변 경</th> </tr> </thead> <tbody> <tr> <td>동대문구 이문동 220번지 일대</td> <td>상세계획구역</td> <td style="text-align: center;">58,000</td> <td style="text-align: center;">53,900</td> <td>신이문 생활권중심</td> </tr> </tbody> </table>		위 치	도시계획구역	면적변경(m ²)		비 고	당 초	변 경	동대문구 이문동 220번지 일대	상세계획구역	58,000	53,900	신이문 생활권중심									
위 치	도시계획구역			면적변경(m ²)			비 고															
		당 초	변 경																			
동대문구 이문동 220번지 일대	상세계획구역	58,000	53,900	신이문 생활권중심																		
<p>3. 제안사유 및 검토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대문구 이문동 220번지 일대는 생활권 중심 지역으로 당초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재개발구역과 중복되고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부분에 8m 도로를 확보하기로 함에 따라 중복지정된 4,100m²를 상세계획구역에서 제외하여 구역경계를 조정코자 함. <p>4.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검토의견</p>																					

- 이견 없음
- 5. 참고사항
 - 현재의 도시계획사항: 일반주거지역, 상세 계획구역
 - 주민 의견청취 결과: 의견 없음.
 - 용도지역 변경결정권자: 서울특별시장

○議長 文一權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15일간의 회기로 제9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중에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승인하고, '96회계연도 결산승인과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또한 2일에 걸친 시장질문을 비롯하여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처리하는 등 성과 있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의 성과가 뒷받침이 되어 금년도를 알차게 마무리하게 될 정기회가 오는 11월 20일에 동료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아무쪼록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16時 25分 散會)

○出席議員 135人

金 種 求	文 錫 珍	申 垆 植
金 廣 洵	金 明 坤	李 智 文
柳 鍾 秘	鄭 水 華	金 在 京
金 玉 源	梁 會 善	呂 鼎 九
黃 炳 五	金 勝 子	慶 奎 福
李 亮 漢	金 平 洛	黃 好 淳
金 明 炫	金 成 洙	黃 仁 明
李 廷 義	鄭 海 純	崔 光 雄
趙 相 勤	朴 一 男	朴 時 河
文 八 卦	禹 元 植	田 炳 萬
鄭 善 順	鄭 鎮 宇	鄭 泰 宗
李 斗 鶴	金 永 姬	金 聖 浩
文 龍 子	朴 正 龜	安 順 德
盧 永 爽	崔 永 運	黃 正 植
金 鍾 來	李 金 라	崔 俊 和
崔 鍾 午	劉 俊 相	金 勝 建
宋 仁 回	高 光 哲	金 相 男

洪 承 采	朴 德 基	朴 贊 秀
金 寧 剛	朴 贊 國	徐 在 浣
梁 東 錡	鄭 炳 權	高 紀 孝
鄭 淵 甫	洪 月 杓	洪 淳 喆
安 秉 昭	尹 鍾 一	宋 德 華
李 達 源	李 英 順	林 鍾 化
李 子 源	尹 福 永	白 南 善
閔 鍊 植	閔 庚 樺	朴 南 植
林 靜 枝	趙 旬 衡	金 成 春
成 聖 鏞	金 洛 淳	具 哲 會
車 星 煥	鄭 鎮 澤	鄭 在 天
金 亨 吉	許 光 泰	劉 大 運
金 在 仁	池 昌 洙	金 天 柱
鄭 址 弘	崔 鍾 根	白 懿 宗
李 始 英	李 允 中	梁 敬 淑
白 聖 德	金 喜 甲	池 龍 鎬
朴 相 根	李 康 玉	朴 洙 桓
金 周 喆	金 芳 林	盧 載 東
洪 樂 元	魚 潤 慶	李 成 浩
李 基 連	高 溶 振	金 泚 柱
柳 德 烈	李 康 珍	洪 性 龍
趙 上 男	朴 康 洙	金 永 春
鄭 炳 仁	孫 謙 洙	張 精 一
劉 起 鍾	李 聲 九	李 昌 根
李 載 震	吳 世 根	金 洙 福
金 錫 浩	金 箕 英	文 一 權
李 善 宰	崔 炳 莘	鄭 福 辰
李 容 富	崔 鍾 德	張 壽 完

書 面 答 辯 書

○金勝建議員

(質疑要旨)

1. 강남구 도곡동 102층 빌딩 건축허가 사전 승인 관련

- '96.9.4. 건축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동 부지에 대하여 초고층화가 무리없다고 하였는데 그에 대한 사실여부 및 사전승인 반려사유는 무엇이며, 건축위원회의 결정이 서울시 정책결정에 어떠한 구속력이 있는지?

- '97.9.12. 시에 제출된 강남구청장의 의견서가 해당회사의 홍보물 같은바, 다른구청장의 의견도 이와 유사한지 및 동건과 관련하여 강남구청장의 견해에 대한 시의 신뢰도는 어느 정도인지?